

제22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국 소관)

2020. 6. 1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00호
- 나. 제 출 자 : 윤 영 희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0. 5. 29(금)
- 라. 회부일자 : 2020. 5. 29(금)

### 2. 제안이유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정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지원 관련사항(예산, 인력, 시설 등)을 제도화 하여 안정적 지역통일활동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운영·사무처리 등 (안 제3조 )
- 다. 보조금 지원 및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안 제4조~제5조)
- 라. 인력 등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 표창 (안 제7조~제9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5. 검토의견

### 가. 제정 취지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0. 5. 29. 운영회의원이 발의하였음.

### 나. 주요 내용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표1과 같으며 목적, 운영·사무처리, 보조금 지원과 지도 감독 등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1 제정조례안 주요내용**

○ 제1조 : 목적	○ 제6조 : 지도 및 감독
○ 제2조 : 정의	○ 제7조 : 인력 등 지원
○ 제3조 : 운영·사무처리 등	○ 제8조 : 공공시설의 이용
○ 제4조 : 보조금 지원 및 준용	○ 제9조 : 표창
○ 제5조 :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 안 제1~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운영 및 사무처리 등을
- 안 제4조~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및 지원신청과 실적보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 표2 경비의 지원 근거 법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 [전문개정 2012. 2. 29.]

- 안 제6~8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 인력 및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도록 함.

## 표3 포상의 근거 법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3(포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

1. 제3조 제2항 각 호의 대행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대행기관 소속 공무원
  - 1의2. 제25조의2 제1항 각 호의 기능 수행 실적이 우수한 지역회의 및 위원
  2. 제30조 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 실적이 우수한 협의회 및 위원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업무와 평화통일 활동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 또는 단체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9. 7. 30.> [본조신설 2012. 2. 29.]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금천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그 밖에 대통령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음.

자치단체별로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붙임1 표와 같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 12개 자치구 제정 완료하였고 전국 243개 중 142개 자치단체 제정하여 민주평통자문회의 협의회를 지원하고 있음.

#### 다. 검토 의견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예산, 인력, 시설 등 지원 관련사항을 제도화 하여 안정적 지역통일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1. 서울특별시 자치구중 조례 제정 현황 1부.

2. 관련법령 1부.

**붙임1****서울특별시 자치구중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구명	제정일	조례명	비고
1	중랑구	2018.11.2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중랑구협의회 지원 조례	
2	강남구	2019.4.26.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3	강동구	2019.1.2.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4	노원구	2019.1.7.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5	도봉구	2019.4.11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6	동대문구	2018.12.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7	동작구	2019.5.9.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8	마포구	2020.2.27.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9	서초구	2020.5.14.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10	성북구	2018.9.27.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11	송파구	2018.11.8.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12	종로구	2020.2.28.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지방재정법 】**

[시행 2020. 4. 30.] [법률 제16889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시행 2015. 12. 15] [법률 제13564호, 2015. 12. 15,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재정담당관) 02-2250-2226

### 제1장 총칙 <개정 2009. 5. 28.>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5. 28.]

**제3조(구성)**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4조(등록)** 통일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는 위촉된 후 지체 없이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5조(의석 배정)** 위원의 의석은 집회 때마다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 제2장 기관 <개정 2009. 5. 28.>

**제6조(의장·부의장)** ① 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0. 5. 20., 2013. 5. 22.>

③ 의장은 제2항의 부의장 중에서 수석부의장 1명을 지명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7조(부의장의 임기)**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의장이 궐위(闕位)되어 임명된 후임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통일자문회의를 대표한다.

② 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권(警護權)을 행사한다.

③ 의장은 수석부의장에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수석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9조(사무기구)** 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

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0. 5. 20.>

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사무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범위
2.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5. 28.]

### 제3장 위원 <개정 2009. 5. 28.>

제10조(위원의 위촉)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0. 5. 20., 2013. 5. 22.>

1.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구·시·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3.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5. 그 밖에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

[전문개정 2009. 5. 28.]

**제11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② 대통령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 5. 22.>

[전문개정 2009. 5. 28.]

**제12조(선서)** 위원은 임기 초에 통일자문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개정 2010. 5. 20.>

"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국법(國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5. 20.>

[전문개정 2009. 5. 28.]

**제14조(직위 남용의 금지 등)** ①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정부투자기업체·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청탁이나 그 밖의 이권운동(利權運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형법」 과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15조(사직)** 위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16조(퇴직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15. 12. 15.>

1.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3.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한 때

② 대통령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때
2.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전문개정 2009. 5. 28.]

**제17조 삭제** <2001. 7. 24.>

#### **제4장 위원회 <개정 2009. 5. 28.>**

**제18조(상임위원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되며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상임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개최한다.

⑤ 상임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상임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19조(운영위원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 제5장 회의 <개정 2009. 5. 28.>

**제20조(집회)**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② 의장은 늦어도 집회일 5일 전에 집회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21조(개회·폐회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②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의장의 개회 선포로 시작하고, 폐회 선포로 끝낸다.

③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친 안건의 의사(議事)가 끝난 때에는 의장은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④ 의장은 집회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휴회(休會)를 선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22조(의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23조(회의의 공개)** ①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국가 안전보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24조(회의의 질서 유지)** 의장은 위원이 회의 중 법령 또는 의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경고하거나 제지할 수 있으며, 위원이 이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25조(발언)** 위원은 의제의 범위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26조(표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27조(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 ① 통일자문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의사 일정
3. 출석위원의 수
4. 회의의 안건과 그 내용
5. 표결 수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위원 또는 일반인에게 배부하거나 반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28조(방청 등)**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의 조직·운영
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5. 28.]

## 제6장 통일촉진기금 <개정 2009. 5. 28.>

**제30조(통일촉진기금)** ①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통일촉진기금을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일촉진기금의 설치, 조성, 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7장 보칙 <개정 2009. 5. 28.>

제31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32조 삭제 <2001. 7. 24.>

부칙 <제13564호, 2015. 12.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시행 2019. 7. 30.] [대통령령 제30006호, 2019. 7. 30., 일부개정]

**제30조(협의회)** ①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출신 지역 및 협의회 참여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7. 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7. 30.>

1.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2. 해당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 3의2.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 3의3.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협의회 회장은 의장이 임명하되,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 회장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7. 30.>

⑤ 협의회에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7. 30.>

⑥ 협의회는 위원 수 및 지역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회에는 지회장을 둔다. <개정 2019. 7. 30.>

⑦ 제3항에 따른 협의회 회장의 임명 또는 지명, 제4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지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9. 7. 30.>

[전문개정 2012. 2. 29.]

[제목개정 2019. 7. 30.]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

[전문개정 2012. 2. 29.]

**제30조의3(포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

1. 제3조 제2항 각 호의 대행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대행기관 소속 공무원
- 1의2. 제25조의2 제1항 각 호의 기능 수행 실적이 우수한 지역회의 및 위원
2. 제30조 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 실적이 우수한 협의회 및 위원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업무와 평화통일 활동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9. 7. 30.>

[본조신설 2012. 2. 29.]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0. 1. 1.]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076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서울특별시 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5.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보조금 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25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